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443
----------	-----

2019년 3월 6일
교 육 위 원 회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2월 1일, 서울특별시교육감

2. 회부일자 : 2019년 2월 7일

3. 상정일자

○ 제285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6차 교육위원회

(2019년 3월 6일 상정, 원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권성연 기획조정실장)

1. 제안이유

가. 서울형 통합운영학교 도입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학부모와 학생의 의견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에 반영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28516호, 2017.12.29., 일부개정) 제59조의4제1항 및 제2항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학교장이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

출한 안건의 경우에는 의견수렴을 생략할 수 있는 단서를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통합운영학교의 운영위원회 통합운영 근거 마련(안 제2조제4항 신설).

나.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학부모 및 학생 대표 등의 의견을 수렴·청취하여야 하는 심의 사항 확대(안 제11조제2항 및 제3항).

다. 학교장이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출한 안건의 경우에는 의견수렴을 생략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1조제2항 단서 신설).

III.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김창범)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개정조례안은 2019년 2월 1일 서울특별시교육감에 의해 의안번호 제443호로 제출되어 2019년 2월 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함으로써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함) 운영의 내실화에 기여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통합·운영학교의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검토(안 제2조제4항 신설)

- 동 개정조례안 제2조제4항은 상위법령에¹⁾ 따라 통합·운영되는 학교

1) 「초·중등교육법」

운영위원회의 경우 이를 통합·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통합운영학교’는 ‘효율적인 학교운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학교급이 다른 2개 이상 학교의 인적·물적 자원(시설·설비 및 교원 등)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학교’를 말합니다.²⁾

그동안 저출산의 영향으로 학령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소규모학교의 증가와는 별개로 일부 지역에서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따른 학교 신설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학생 수와 지역 여건 변화에 따른 교육수요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는바, 이러한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통합운영학교’ 제도가 도입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현재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18년 11월 송파구 도시재건축 단지(헬리오시티) 내에 건립된 “해누리초·중 이음학교”를 통합·운영학교로 지정하여 2019년 3월 개교할 예정이라고 밝힌바 있습니다.³⁾

제30조(학교의 통합·운영) ①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효율적인 학교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지역 실정에 따라 초등학교·중학교, 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시설·설비 및 교원 등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합·운영하는 학교의 시설·설비 기준 및 교원배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6조(학교의 통합운영) ① 학교의 설립·경영자는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를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의 규모, 학생의 통학거리 및 당해 통합운영대상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주민의 의사 등 교육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통합운영학교의 시설·설비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통합운영학교에는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배치기준에도 불구하고 통합운영되는 학교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직원을 배치할 수 있으며, 학교의 설립·경영자는 학교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직원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교직원 배치기준, 교육과정의 운영, 예산 편성·운영,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무관리나 그 밖에 통합운영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할청이 정한다.

2) 교육부 「초·중·고 통합운영학교 관리 가이드라인」(2013.2)과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형 통합운영학교 관리지침」(2018.10)

3) 서울특별시교육청, 2019년 서울, 새로운 학교 모델 “이음학교” 도입, 보도자료, 2018.11.9. 참고.

[표] 해누리초·중 이음학교 현황 (2019. 3월 개교, 2018. 11월 통합운영학교 지정)

학교명	소재지	부지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학생수	학급수	급당인원
해누리초	송파구 가락동 479	12,705㎡	22,454㎡ (4,653㎡)	780	26(1)	31.2
해누리중				748	23(1)	34.0
합 계				1,528	49(2)	32.6

○ 동 개정조례안 제2조제4항은 상위법령에 따라 ‘통합운영학교’의 경우 그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있어 학교의 규모,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통합·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조례상에 명시하려는 것인바,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 학부모 의견 수렴절차의 생략(안 제11조제2항 단서)

○ 동 개정조례안 제11조제2항 단서는 운영위원회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4제1항에4) 따라 ‘학교현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등을 심의하는 경우 학교장이 미리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한 때에는 의견수렴을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학교장이 심의 전에 학부모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이를 안전과 함께 제출하였다면 중복적인 의견수렴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운영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려는 것으로 행정절차의 간소화 측면에서 조례 개정에 따른 별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그 밖에 안 제11조제2항 본문과 제3항 본문의 개정은 상위법령에 따

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4(의견 수렴 등) ①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려는 경우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법 제32조제1호, 제5호, 제6호, 제9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사항

2. 그 밖에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로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정한 사항

라 적용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으로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수정안의 요지 : 없음.

VII. 심사결과 : 원안 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VI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IX.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학교를 통합·운영하는 학교는 운영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제1항 중 “영 제59조제5항” 을 “영 제59조제6항” 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59조의4제1항에 따라 운영위원회는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을 “운영위원회는 영 제59조의4제1항에 해당하는” 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운영위원회는 학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출한 안건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제3항 중 “학생의 학교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을 “영 제59조의4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등) ① ~ ③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제10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u>영 제59조제5항</u>에서 규정한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p> <p>② ~ ⑥ (생략)</p> <p>제11조(심의사항) ① (생략)</p> <p>② <u>영 제59조의4제1항</u>에 따라 운영위원회는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p> <p>1. ~ 4. (생략)</p> <p>③ <u>운영위원회는 학생의 학교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u>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p> <p>④ ~ ⑥ (생략)</p>	<p>제2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u>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학교를 통합·운영하는 학교는 운영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u></p> <p>제10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u>영 제59조제6항</u>----- -----.</p> <p>② ~ ⑥ (현행과 같음)</p> <p>제11조(심의사항) ① (현행과 같음)</p> <p>② <u>운영위원회는 영 제59조의4제1항에 해당하는</u> ----- ----- -----.</p> <p><u>다만, 운영위원회는 학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출한 안건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u></p> <p>1. ~ 4. (현행과 같음)</p> <p>③ ----- <u>영 제59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u> ----- ----- -----.</p> <p>④ ~ ⑥ (현행과 같음)</p>